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2009. 11. 9 (월) 10:00~12:30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진행순서

1부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 사■ 개 회 사 및 기조연설<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수 희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
2부	입법(안)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성 린 (국회의원)■ 입법(안) 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용 태 (국회의원)■ 지정토론<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진 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 청 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 박 두 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주 영 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고 윤 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축 사



국 회 의 장
김 형 오

나눔 문화의 확산과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뜻 깊은 입법공청회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재)여의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공청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제안해주신 김용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나눔 활동이 보편화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부 참여율은 55%로 세계 평균치인 70%에도 못 미칩니다.

기부문화의 천국 미국은 85%나 됩니다. GDP 대비 기부규모도 2.2%로 3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는 0.9%에 불과합니다. 기부에 인색한 국가라는 불명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은 존경받는 저명인사들이 부의 사회적 환원으로 기부문화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오늘날까지 다수의 부호들이 기부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오늘의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모범국가이고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속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에 어울리는 국격(國格)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확산이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부를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부의 생활화는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활력소입니다.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놓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게 돈 쓰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기부는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품격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눔 실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국 회 의 장
김 형 오

축 사



한 나 라 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문화 선진국인 미국의 개인 기부 참여율이 연평균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부문화 창출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평소 “베풀고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선구자가 있었기에 오늘 미국의 선진적 기부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사회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도 선진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고 기부시장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 재단’ 설립도 소중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기부율은 약 15%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족하지만, 기부처의 불투명성에 따른 불신과 충분하지 않은 기부정보 등이 기부문화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첫걸음인 기부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부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효율적인 기부문화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참석하신 각계 최고의 전문가 분들께서 기부문화의 행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신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축 사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
안 상 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청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여의도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 확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헌납을 계기로 실천하는 기부문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기부자가 보다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합리적인 혜택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나눔의 문화가 보편화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기부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투명한 기부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을 통해 생활 속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 상 수

개 회 사



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진 수 희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진수희입니다.

바쁜 정기국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님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청회를 찾아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직접 다듬어 개정법안을 발표해 주실 김용태 국회의원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나성린 국회의원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진수 박사님, 박 훈 교수님, 이청수 고문님, 박두준 사무총장님, 주영섭 조세정책관님, 고윤환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부는 사회통합과 공동체 결속을 위한 국가의 중요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기부는 자원봉사와 더불어 시민사회를 떠받드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특히, 기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봉사 활동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주는 이중효과를 발휘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부는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빈부의 차이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와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에, 시민사회발전과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기부 ≙ 투자』 라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유럽 등 소위 기부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기부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선이나 기부가 선의(善意)와 박애 같은 고결한 정신의 발로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고결한 선행에 기댄 수동적 자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행정적·제도적 제반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교육과 복지분야의 많은 영역을 기부와 자원봉사 등을 통한 민간부문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여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실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기부규모는 8조 7,000억 원으로 10년 전 2조 5,000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비슷한 시기 미국의 274조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7월초,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재 331억 원을 선뜻 사회에 기부하여 몸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우리의 기부문화는 ‘시장 할머니의 미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 토대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시급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감히 ‘나눔’을 소비적 나눔과 투자적 나눔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이 전자인 소비적 나눔이라면, 교육기회의 제공·기술혁신 지원·사회변화 유도·문화예술 동참 등은 후자인 ‘투자적 나눔’에 속합니다. 빈곤·의료 등은 국가에 맡기더라도 미래를 위한 교육과 복지에서는 민간의 영역과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가 투자고, 기부자가 투자자라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막는 세세한 문제점들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등 현재 기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가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양질(良質)의 기부문화 확립되어야...

내외 귀빈 여러분!

기부는 처음 새끼손가락을 내민다고 생각하다 결국 팔 전체를 내미는 것처럼 기부가 ‘아름다운 중독’이 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가 일신되어야 합니다. 믿고 기꺼이 기부 할 곳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국가의 몫입니다.

2009년 9월 기준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약 1,500여 곳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모금내역 공개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前, 3억 원을 기부 받은 사회단체와 학교가 잇달아 자금을 유용·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부금이 정처 없이 떠돈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부를 막는 이유로 22%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라는 전경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투명성 확보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입니다.

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부의 양적(量的) 확대와 아울러 투명하고 건전한 양질(良質)의 기부문화가 확립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신용평가기관 설립’ 과 ‘모금전문가(fund-raiser) 자격제도 도입’ 등도 진지하게 검토 되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모은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금활동을 벌이는 기관들은 그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설립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기관 이름만 치면 그곳이 믿을만한 곳인지, 얼마나 모금하여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만 달러 이상의 거금(巨金)을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charitywatch.org 같은 곳을 찾아가면 그 단체의 신용등급과 정보가 공개 되어 있어 기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중한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모금전문가(fund-raiser) 자격제도 도입

모금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CEO처럼 비영리단체의 활동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모금대상·모금방법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기부모금액 중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전문가 육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모금전문가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 취득보다 더 어려운 전문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금전문가들을 교육·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고, 이러한 제도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모색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끼고 저축할수록 작아지는 것이 ‘사랑’이지만, 베풀고 나눌수록 커지는 것도 또한 ‘사랑’입니다. 기부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 넘치는 곳과 모자라는 곳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려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을 위한 고결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의 몫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공청회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까지 진지하게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입법개정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진 수 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목 차

입법(안) 발표 Ⅱ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15 - 김 용 태 (국회의원)
지정토론 Ⅱ	■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편 33 - 김 진 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편 39 -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편 53 - 이 청 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제안 61 - 박 두 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및 정책방향 73 - 주 영 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 81 - 고 윤 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

입법(안) 발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김 용 태

(국회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김 용 태
(국회의원)

□ 기부현황

-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
-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수요의 급속한 증대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GDP 규모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2007년 GDP 대비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액 비율 0.9%, 미국 2.2%)

GDP에 대비한 기부금 지출 수준

(단위: 억원, 억달러, %)

	기부금(A)	GDP(B)	A/B
한국	85,914	9,750,130	0.9
미국	3,064	138,076	2.2

주: 2007년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IMF, Data and Statistics

- 기부문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기부주체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개인 및 유산 기부는 2,521.8억 달러로서 전체 기부금액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및 재단 기부는 542.1억 달러로서 전체 기부금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종교단체에 현금(미국의 경우 약 33%) 등의 형식으로 기부하는 금액(우리나라의 경우 80% 초과)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자선적 기부는 개인 보다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부금 지출 규모

(단위 : 조원)

		'99	'01	'03	'05	'07
기부금 계		2.9	4.67	5.9	7.13	8.75
개인	근로소득자	0.80	2.70	3.20	3.60	4.23
	종합소득자	0.05	0.28	0.54	0.74	1.14
	소 계	0.85	2.98	3.74	4.34	5.37
법 인		2.05	1.69	2.16	2.79	3.38

* 다만, 개인 기부의 80%이상이 종교단체 기부

기부 인원

(단위 : 천명, 천개, 조원)

		'05	'06	'07
개인	근로소득자	3,102	3,342	3,483
	종합소득자	307	401	469
	소 계	3,409	3,743	3,952
	기부금계	4.34	5.20	5.37
법인	법 인 수	33	35	45
	기부금계	2.79	3.32	3.38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공제액

(단위 : 조원)

구 분	'05	'06	'07
개인(근로자)	3.6%	3.6%	3.3%
법 인	1.6%	1.7%	1.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2007년 기부금 총액 2,673억원 중에서 기업 기부액의 비중이 67.8%였던 반면 개인 기부액의 비중은 15.7%에 불과하였음

□ 정책 추진 방향

- 우리나라 기부시장은 점차 확대 중임. 이 과정에서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와 기부금 영수증 불법관리(예컨대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건) 등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 따라서 정책에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문화적, 제도적 보완 요소로 기부의 투명성 확보 등 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인 기부자의 동기 유발, 편의성 증진, 세제 등의 지원 확대를 도모
- 법률 개정과 더불어 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문화적, 제도적 보완으로 기부에 대한 사회 신뢰도 제고 필요
- 이를 위한 사전적 제도적 요소로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집계, 비영리 단체에 대한 통계 등 조사 발표 필요
- 더불어 세제감소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그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헌법상 복지국가 원리와의 충돌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부를 활성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세수감소의 우려 불식 가능
 - 기부는 단순히 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 역할 대체의 의미를 넘어 국가가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국가 기능의 보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활동 지원 등의 기능이 있음

□ 법률 개정 사항

1.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1) 현행

- 법정기부금 : 전액 소득공제
- 특례기부금 : 50%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 30%, 정치자금 등 몇몇 예외 있음)
- 지정기부금 : 15%(2010년 이후 20%) 소득공제

※ 기부금 손비한도 조정연혁

- 법인 기부금 손비한도 축소 :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7% + 자본금의 2% → 소득금액의 5% ('98)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 50% ('00)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 75% ('06) → 50% ('09)
- 개인 지정기부금 손비한도 확대 :
 - ('99 이전) 5% ('00~'07) 10% ('08~'09) 15% ('10 이후) 20%

(2) 개정내용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0%로 상향조정(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3) 개정이유

- 기본적으로 법인의 기부보다 개인의 기부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큰 차이가 있으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월공제 허용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고 프랑스의 경우 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의 범위는 다른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하여 결론을 내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부금은 국가의 복지 예산에 대한 대체 역할을 하므로 그로 인한 세수감소는 수용하여야 함. 그간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보완 되어 왔으므로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세수감소 방지 가능

(4)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에서는 ① 외국 대비 소득공제 한도가 일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고 ② 개인의 경우 기부금 한도를 지속 확대하였고[('99) 5%→('00~'07) 10%→('08~'09) 15%→('10~) 20%], 특히 2010년부터 공제한도를 20%로 추가 확대키로 既조치하였으며 ③ 현재 개인 기부금의 약 80%가 종교단체 기부인 바, 한도 확대할 경우 이것이 교육/사회복지분야 기부로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현행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임
- 기부금 분류 기준은 인정하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상향
-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기부받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익성 평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도입 필요. 이를 위하여 공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함
- 현행법은 기부받는 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정 / 특례 / 지정 기부금으로 나누고 있음. 이러한 기부금 기준을 단순화·체계화함으로써 기부금 단체 간 형평성 도모 필요. 우선적으로 특례/지정의 완화부터 검토 필요

2. 개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1) 현행

- 법정기부금 없음
- 특례기부금 1년
- 지정기부금 3년(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

(2) 개정내용

-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이월기간 2년(소득세법 제34조)으로 개정
- 특례기부금 소득공제 이월기간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으로 개정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이월기간 5년(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
- 근로자에도 이월공제제도 적용(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소득세법 제52조 제10항 개정)

(3) 개정이유

- 현행 세법상 기부 시 세제혜택이 일시 고액자산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현행 기부금공제제도는 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소득은 작지만 고액을 기부하는 자산기부자에게는 기부금공제의 혜택이 거의 돌아갈 수 없음
- 예컨대 매년 1억씩 10년 동안 10억을 기부하는 경우와 일시에 10억을 기부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전자는 10년에 걸쳐 매년 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시 기부한 한해(법정기부금) 혹은 다음연도(특례기부금)로 끝나거나 3년(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할 뿐임
-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비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따라서 공익성이 높은 수준에 비례하여 이월공제 기간을 포함한 총 공제되는 수준이 지정 기부금 수준 상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법은 해외 각국의 경우에 비하여 이월공제 기간이 짧음

(4) 참고사항

- 현재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이 제출 상태임
- 근로자에 대하여도 지정기부금에 한하여 이월공제 허용에 동의하는 정부안이 제출 상태임
- 기획재정부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현행법상 공제 한도가 높으므로 공제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음

3.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확대

(1) 현행

-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5%(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 초과 취득 금지

(2) 개정내용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보유 및 취득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49조 개정)

(3) 개정이유

-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기부하여야 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도 있으며, 기부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매각이 쉽지 않음
- 기업가가 기업 운영은 유지하면서 지분에 대하여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 현재는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외부감사가 많고 자산운용에 제한이 따르는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고자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출연하기 보다는 주식으로 출연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하여 적대적 M&A에 대처하는 것을 선호함
- 이러한 개정이유에도 불구하고 재벌보주기라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으로서 충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만 허용

(4) 참고사항

- 2007년 완화 추진 과정에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부의 20% 허용 추진이 일반공익법인 5%, 성실공익법인 10% 허용으로 끝남(법개정 이전에는 5% 허용)
- 그 이후 일반 지주회사의 설립은 허용하면서도 지주회사 가능성이 적은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보유 한도 상향조정은 미루어 왔음
- 현재 상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이종구의원 대표발의 되어있음

4. 부담부자산 기부 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

(1) 현행

- 현금 외 자산 부담부 기부시 채무이전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

(2) 개정내용

- 기부 자산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분납, 일정기간 거치 후 납입 등 완화 방안 마련(소득세법 제104조, 제116조 개정)

(3) 개정이유

-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자는 실제 자산에서 부담을 제외한 총액을 기부하는 것임
- 예컨대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 30억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가액 100억 원의 건물을 공익 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30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어 건물 외 자산이 없는 경우 기부할 건물을 매도하여야 하므로 건물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
-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 활성화 필요. 예컨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산기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건물·분양권 등의 기부문의가 있었으나 처분하여 현금으로 기부해 달라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임

(4) 참고사항

- 동 쟁점은 향후 현금 외 자산 등 기부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 향후 부동산 외에도 기부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을 납입하는 방법 등 새로운 방법 발굴과 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필요

5. 임대용 부동산 기부 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1) 현행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100분의 80 면제

(2) 개정내용

-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의 감면 범위를 100분의 80 면제에서 100% 면제로 개정

(3) 개정이유

- 건물을 기부 받은 장학재단은 대부분 건물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 사업을 영위
- 취득세 등 감면제도 도입 이후 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강화되어 부작용 우려 감소

6. 공익법인 설립요건 완화와 기본재산 처분 규정 완화

(1) 현행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주무관청은...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고 규정하여 출연재산의 수입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현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임

(2) 개정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기본재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 또는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기본재산 처분 신고 규정 신설)

(3) 개정이유

- 기본 재산을 낮은 금리와 임대료 수입 외 주식투자 등 보다 나은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 운용이 공익법인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화 돼 있음.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깝은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운영의 활로가 다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빌 게이츠재단이나 하버드대학(HMC:하버드재산관리회사)의 경우 기부재산의 운용이 자율화 돼 있어서 주식에 65%정도, 부동산에 20%, 국채, 외환 등 기타 15%정도로 투자하여 연간 평균 15%-20%의 재산증식을 통해 공익사업이나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고 있음
- 기본재산 처분 신고 규정은 엄격한 제한 하 검토 가능
- 다만, 처분의 경우에도 현금화를 제외한 교환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참고사항

-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제외한 교환 등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음
- 기본재산 처분 완화 규정 개정과 병행하여 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7. 농지 기부 활성화

(1) 현행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농업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는 경우,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를 허용

(2) 개정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5 또는 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서 농지를 출연 또는 기부 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제9호의3 및 제7조제4항 신설)
- 농지를 소유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 농지를 취득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제23조제1호 신설)

(3) 개정이유

- 농지 소유자의 농지 기부를 가능토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

(4) 참고사항

- 농수산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
- 하지만 현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보존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상 일정한 제한 하 재단의 농지 소유 허용하는 법안 제출되어 있음
- 취득 후 일정기간 이후 매도를 강제하는 제도를 두어 헌법상 원칙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8.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현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만 소득공제 인정(소득세법 제34조의 제2항 3의2)
- 자원봉사용역은 1일 5만원 상당의 기부금으로 인정하며,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용·재료비 등 직접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6항)

(2) 개정내용

- 용역기부의 경우 전년도 1년 소득금액을 일할(日割)계산한 부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용역을 기부하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도 기부금으로 인정(소득세법 34조 개정)

(3) 개정이유

- 회계감사, 법률자문, 의료서비스 등 전문가들의 용역 기부 수요 증대
- 기업이 본업과 관계되는 전문분야에서 임직원 등 용역 기부 활성화 필요(향후 기업 기부 활성화 방향의 전제)
- 영국의 경우 사업자 등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용역을 자선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와 기타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
- 용역기부의 경우 기부가액 산정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 예컨대 개별근로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할(日割)계산

(4)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에서는 ① 용역기부의 경우 기부가액 산정이 어렵고 ② 봉사사실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며 ③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사례 없음을 들어 부정적임
- 시작단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직업별, 영역별 기부 가액 산정 기준 마련
- 법인 기부의 활성화는 현금 등의 직접기부보다는 법인의 전문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 경우 임직원의 용역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

□ 제도 개선 사항

현 시점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을 통한 양적 토양의 확대가 중요함. 그 다음 관련부처의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활성화를 추진함. 이를 위하여 기부의 투명성 확보(통일된 서식 마련과 의무적 공시 등), 다양한 기부 방법 개발(카드 포인트 기부 등), 모금기술의 전문성 확보(모금전문가-fundraiser 자격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고려 필요

1. 카드 포인트 기부 활성화

(1) 현행

- 포인트 기부 관련 특별 법령 없음(다만, 포인트 기부액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됨)
- 포인트 기부제도 도입('01년) 이후 09.3월 말까지 포인트 기부 누계액은 34.3억원에 불과
- 20개 카드사 중 15개사만 포인트 기부제도 운영
- 현재 포인트 기부처,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고 포인트 기부제도에 대한 카드회원 및 카드사의 인식 미흡으로 기부실적도 저조

(2) 개선내용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채널 확대
 - 카드사 홈페이지 포인트 사용 메뉴에 “기부코너” 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포인트 기부 홈페이지 (예: 신한카드 아름다운인)를 신설
 - 홈페이지 이외에도 ARS,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기부채널 다양화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방법 다양화
 - 소멸예정 포인트 자동기부, 매일 일정 포인트 기부(정액, 정률) 등 향후 발생할 포인트에 대한 자동기부 방법 신설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전용카드 출시 확대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처 확대
 - 카드사가 포인트 기부대상 사회복지단체(대부분의 카드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10개 내외의 기부처만 운영. 다만. 신한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선/후원/시민운동 등 테마별로 기부처를 다양하게 운영)를 적극 발굴하고 카드회원에게 기부처를 적극안내

-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 회원의 포인트 기부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소득공제신고간소화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추진
- 상기 정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 마련하여 카드사에 지도 및 홍보

(3) 제도 개선 이유

- 최근 소멸 포인트 등을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기부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카드 포인트 기부는 개인의 소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의 보다 적극적 지도 필요

2. 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

(1) 현행

-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기부금 관련 항목이 없음

(2) 개선내용

-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관련 항목 추가 혹은 모금 기관별 인터넷발급 영수증의 국세청 인정 방안 마련
- 별도코드로 기존 KT나 이동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청구서에 ARS통화내역을 표시하여 이를 소득공제 근거자료로 사용
- 기부금 영수증 불법관리와 관련한 사건 방지(관련기사 : 속고 속이는 공무원...가짜 기부금 소득공제, SBS 2007.10.08 ; 포스코 450억대 가짜 기부영수증 소득공제 환급 의혹 이뉴스 투데이 경제 2009.01.23)

(3) 개선이유

- 세제혜택 외 세제혜택을 위한 제반 서비스 강화 필요
- 기부금 단체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약 개발비용 1억, 유지보수비 연간 1천만원)되므로 구축이 어려움

(4) 참고사항

- 기부 문화 활성화의 전제로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 확보와 기부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므로 조속한 서비스 확대 필요
- 현재 국세청에서 대외적 발표는 없이 내부적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준비 중. 향후 법정기부금 중 몇몇 개에 한하여 시범적 시행 예정

3. 비영리단체 제출 서식 및 공시 제도 개선

(1) 현행

- 현재 비영리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공시 및 서식이 다양하고 중복되어 있음. 특히 비영리단체가 설립의 근거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회계기준이 각기 다름
- 또한 관련부처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포괄적 공시 제도가 없음

(2) 개선내용

- 비영리단체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통일된 서식을 마련하고 중복된 신고사항을 통일
- 비영리단체를 위한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
- 관련부처에 제출된 통일된 서식을 통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 개선이유

- 비영리단체의 업무 과다 방지, 관련부처의 일관된 관리와 공시 등 단체의 효율적 공시를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의무제출 서식 중 중복 신고사항을 없애고 통일된 보고 서식을 마련
- 비영리 단체의 회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체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를 표준화함
- 통일된 서류와 회계기준은 비영리 법인의 정보공개 신뢰도 확보의 전제임

(4) 참고사항

- 2003년 회계기준원에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문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문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법률 개정안과 제도 개선안은 그 동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과세 제도의 개선안으로 학계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기부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안으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먼저 현재와 같이 기부금의 유형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 기부금의 성격을 볼 때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의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또는 손금산입 한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기부금을 유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공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과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본 개선안에서는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 (2010년 이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의 기부금 유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찬성함.
- 그러나 기부금을 이원화한다면,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과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의 구분을 위해서는 공익성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국세청에 공익성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로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보다는 국세청에 공익성검증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됨.
- 이렇게 함으로써 세법에는 현재와 같이 기부금 수혜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 수혜단체의 변경을 위해 세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짐.
- 본 개선안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06년 이전 100%에서 2006년에는 75%, 2009년에는 50%로 축소되어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5%임.
-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기업이 부담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기부하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주주의 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부는 기업 차원이 아닌 부와 소득의 귀착자인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과 공익성이 약한 기부금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10% 정도의 손금산입 한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개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확대, 부담부 기부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 임대용 부동산 기부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지기부 활성화방안,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 공익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자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공익법인의 설립이 많아지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워질 것임.
- 본 개정안이 예를 들고 있는 현금 5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를 검토해 본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해주기보다는 기존의 규모가 큰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 처분 하는 것을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동의함.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문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문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¹⁾)

본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개선안은 현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현 시점에 개선이 즉시 필요한 여러 쟁점이 다루어졌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지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도 변화이전에 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제도의 변화가 또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선안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기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제도상 혜택을 주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보완 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그렇더라도 악용될 우려 때문에 제도 개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세무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분야의 행정력의 보완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선 시행, 후보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음.

1.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에 대한 의견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를 통한 기부금 액수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항상 제도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세제 혜택

1)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현), 한국세무학회 기획이사(현), 한국국제 조세협회 편집이사(현), 국회 입법지원위원회(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 등 역임.

확대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폭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장애로 작용하게 됨.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지정기부금의 경우 5%에서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되므로 충분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강화되어 실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을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자는 논의도 있을 수 있음. 얼마를 확대해 주어야 하여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주어진다든가 의미에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 확대는 그 자체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0%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개인이 자신이 내는 기부금이 어떠한 한도에 걸리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당 기부금 받는 단체의 경우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절차를 모르거나 오해를 하여 개인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받는 것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 이는 기부금종류가 법정(전액), 특례, 지정, 비지정 등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문제임. 기부 받는 단체의 공익성을 국가가 법령을 통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정, 특례, 지정으로 나누는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음. 이 방식이 해당 기부 받는 단체의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기는 함. 그렇지만 지나친 기부금종류를 나누는 것은 개인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종사자에게 세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임. 최소한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구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필요. 이러한 구별을 없애면서 개인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하는 단체가 법정, 지정, 비지정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행정적인 보완책은 마련해 두는 것은 필요함.

소액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법정(전액), 특례, 지정 어디에 해당하든 지정 기부금의 한도 미만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현행 기부금종류는 세제만 복잡하게 하고 실익은 없을 수 있음. 다만 일시에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현실적으로 세제상 혜택의 차이를 가져오기는 함. 이 부분은 이월공제의 문제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기부금과 관련된 소득공제의 문제는, 기부금에 대한 여러 정책적 고려를 한 나머지 현재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복잡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10%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산식 자체는 복잡하게 되었음. 이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 등"이라 한다)]×100분의 10+[(해당 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해당 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8.12.26. 개정) (이하 생략)

2. 개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정부의 2009년 8월 발표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 * 개인 :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 이월공제기간 → (日, 英, 호주) 없음 (美,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5년

1년간 소득보다 많은 자산을 기부한 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의 경우도 이월공제기간 도입 및 확대는 긍정적. 다만 자산의 기부에 대한 평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이외 재산기부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금 이외 재산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없도록 과세행정상 조치할 필요는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3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은 하고 있음.

3.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확대는 종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제한한 역사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식출연 한도 확대에 부정적일 것이고, 일단 출연자 개인재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으로 바뀐 점에 초점을 맞추면 어느 정도 주식출연 한도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음.

공익법인에 주식출연을 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통제를 여전히 출연자와 그 특수 관계자가 하고 있어 증여세나 상속세상 혜택을 누리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하는

점이 강조되는 것은 전자의 예라 할 수 있음. 반면에 저금리 하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은행예금의 형태로 운영하여 예금이자만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고율 배당의 주식을 출연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의 주식출연 한도제한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최근 사례로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인 지배구조 유지보다는 고율 배당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도 주식출연 한도초과로 나중 고액의 가산세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었음.

공익법인을 통한 지주회사 운영의 문제는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 현행 제도 하에서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 주식출연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보유단계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일단 주식의 출연을 적극 장려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4. 부담부자산 기부 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의견

기부는 현금만이 아니라 생전 모아둔 현금 이외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한 재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는 그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부하기 전에 담보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 것임. 이러한 재산 기부의 경우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시키고 그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기존의 현금 위주의 기부금 처리하는 방식의 측면에서는 간단할 수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이 과정의 세 부담까지 일거에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기부단체의 경우도 고액의 부동산의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결하고 기부를 받기를 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부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기부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재산의 피담보채권을 기부 단체에 부담시키는 경우 대가를 받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 이연등의 혜택을 통해 실제 기부단체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기부 받는데 세제상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기부자와 기부 단체 간 부담부자산 기부시 지금 당장의 현금으로 내어야 할 세금부담 때문에 기부가 장애가 되는 것을 세제상 지원하지는 취지는 긍정적. 다만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이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보다 더 큰 기부액이 기부단체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5. 임대용 부동산 기부 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한 의견

장학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일단 취득세 및 등록세상 현행 제도에서도 100%가 아니라도 80% 취득세 및 등록세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임. 악용의 사례는 임대수입에 대한 법인세 단계에서 부담을 지울 수 있을 것이므로 취득단계에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6. 공익법인 설립요건 완화와 기본재산 처분 규정 완화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 보니 공익법인의 설립단계에서 제한을 두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 설립요건의 완화는 철저한 사후관리의 담보될 필요는 있음. 공익법인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상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설립은 자유롭고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부에 대한 지원이라는 방향에서 바람직. 공익법인중 장학재단의 경우처럼 그 사용처(장학금 지원등)에 대한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곳에 제한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공익법인을 큰 예외 없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공익법인이라는 제도를 그나마 운영하는 하나의 차선택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통일적 운영이 오히려 공익법인 출연에 장애가 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임. 세제혜택은 누리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려는 사후관리를 통해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학재단의 경우는 분명 기존의 예금이자에 갇힌 운영은 변화가 필요하고 자산운영의 탄력적인 운영과는 별개로 소멸성 형태라도 운영하려는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7. 농지 기부 활성화에 대한 의견

기부자산의 그 자산의 특성 때문에 기부 자체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필요성은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기부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인정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농지 기부를 허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을 통한 소작농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공익법인의 소유한 허락된 농지소유제도 운영이 헌법 제121조와 상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소유가 허락되는 공익법인의 제한, 소유량 제한 등이 병행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공익법인의 소유가 농업생산성의 제고,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라 볼 여지는 있음.

헌법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8.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전문가 용역기부에 대해 현행 세법 하에서도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우회적으로 기부금 산정할 수는 있음.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면 이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단체가 책정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을 전문가가 기부단체에 다시 기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일단 이러한 경우 전문가가 지급받은 금액은 일단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잡히고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계산하게 되면 한도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기부자는 세제혜택은 사실상 없고 기부금 액수는 산정하는 결과를 가져옴.

전문가 용역기부 자체에 대한 법 개정은 이 용역기부의 시가만큼 소득은 파악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함. 용역기부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 실제 용역기부를 했는지의 문제가 그 제도운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국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지역제한을 없애고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경우에도 적용할 때에도 나타나는 문제임. 다만 1일 5만원 계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기부 받는 단체와 기부자간에 기부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상호 감시하는 체제구축은 필요함. 현금이라면 기부자가 현금 기부하였다고 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면 기부단체는 현금 받은 것을 세무서 보고나 공시를 통해 확인받기 때문에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기부하지도 않을 것을 기부 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용역기부의 경우는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자나 기부 단체 간 있지도 않은 용역기부를 있다고 할 우려가 있음. 기부단체나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의존하기는 현재 어려움은 있음. 용역기부에 대한 확인절차에 대한 보완과 세제혜택이 함께 진행될 사항임.

9. 카드 포인트 기부 활성화에 대한 의견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채무의 의미를 가지지만 회원의 경우 개인차에 따라 권리로 행사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외국동전에 대해 기부단체가 이를 모으는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자의 활용도 낮은 것을 모아 원래의 경제적 가치를 기부단체가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카드 포인트에 대한 기부활성화는 카드 회원의 포인트 사용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음. 그냥 놔두면 소멸하지만 적어도 기부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기 때문임. 카드사의 협조와 과세행정상 편의만 제공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됨.

10. 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견

기부는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는 자가 있고 이것이 세제혜택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국세청도 이해관계자가 됨. 이 과정에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실제 기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행정상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됨. 이러한 확인을 기부자에게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부단체에서 할 것인지, 혹은 양자 모두에게 할 것인지 과세행정상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음.

소액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기부단체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기부단체의 납세순응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음. <https://npoinfo.nts.go.kr/ndp/index.jsp> 의 경우 처럼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을 국세청에서 구축하듯이 기부단체의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는 있음. 소액기부자의 경우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림1]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국세청)

11. 정기기부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액수별, 기부자산의 종류별 이외에 정기성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할 것인지는 찬반이 있을 수 있음.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1회의 기부를 세제혜택 때문에 일부러 수회에 걸쳐 쪼개어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소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연간 1~2회의 대규모 모금이벤트로 모금하여 일괄 배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대부분의 모금기관의 정기기부와 연간 모금캠페인에 적용하기 어렵다 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투명성강화에 대한 요청은 기부단체의 행정비용 증가를 의미함.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비 부담도 고려할 필요 있음. 규모가 작은 기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성 기부를 활성화하여 회계감사 같은 부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전문성 기부항목에 회계와 IT같은 분야를 명기하고 기준을 제시해서 기부하기 좋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투명성도 확보하고 기부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일 수 있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문



이 청 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문

이 청 수

(관정이중환교육재단 상임고문)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제도적 개선방안> 비공개 토론회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공익법인 일선 운영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구체적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 공익법인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

1.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의 지정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상 개인소득의 필요경비 산입비율을 현행 15%(지정기부금공제율, 2010년부터는 20%)에서 개인의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과 같은 50%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30% 정도라도 올리는 것이 필요함.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 34조 2항 6호 나목

*이유: 등록금 등의 반대급부가 있는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의 기부자에게 법정기부금률(50%)을 적용하면서 반대급부가 없는 공익장학재단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률(15%)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개인 지정기부금과 법정 또는 특례기부금과의 공제율 격차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인의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상 법인소득의 손금산입 비율을 법인소득의 현행 5%(지정기부금률)에서 최소 10% 내지 20% 수준으로 인상 필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24조 2항 4호에 장학법인 추가 또는 동법 24조 1항의 지정기부금

*이유: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제비율 인상이 재벌 봐주기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임.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제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법인에 대한 기부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재벌회사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음. 재벌회사의 기부가 많아지는 것은 법인의 이익이 회사의 확장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확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에게도 확산된다는 장점이 있음.

3. 개인과 법인의 각 기부금 체계를 현행 3원화에서 2원화로 각각 재분류하여 공제비율을 50% 그룹과 30%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공익성이 높은 장학재단 등과 같은 공익법인은 법정과 같은 50%공제 그룹에 편입 되는 것이 바람직함)

4.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취득(또는 보유)비율 현행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일반공익법인은 10%, 성실공익법인은 20%까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한나라당의 원안 발표 내용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20%로 인상하고 일반공익법인은 5%로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음.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2항 2호

*이유: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취득 보유를 5%(성실공익법인은 1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주식기부나 공익법인의 선의의 주식 취득과 보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음.

정부가 지난 2007년 공익법인에 대한 내국법인 주식 기부 또는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보유 및 취득의 한도를 20% 정도 늘려 주려고 했으나 재벌 봐주기라는 일부의 반대로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10%로 완화하는데 그쳤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재벌 봐주기로 되고 있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나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보유나 취득을 보다 완화해 줌으로써 재벌기업이나 일반기업이 기부의 압력을 더 받게 되고 재벌기업 또는 일반기업의 이익이 재벌 개인이나 주주 또는 해당기업 직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일반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의 독자적 발의(2009년 3월)로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계류 중임.

5. 정부가 지난 8월 2009년도 세제개정 발표에서 성실공익법인의 기준을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비율 현행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3조 3항 1호

*이유: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공익법인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 재산의 취득의 길을 조금 더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6. 법인이 현금 이외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할 때 자본이득차익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과표를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때와 같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함.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차익세를 시가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함.

II.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기본재산 중 20% 범위 안에서는 당해 공익법인에 자율성을 부여, 주무기관에 대한 신고제만으로도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입, 교환 등이 가능하게 하는 한나라당의 안은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판단됨.

* 관련법령)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과 동 시행령 제 17조와 18조

* 이유: 1) 현행 금리가 제로 금리로 근접해 가다 아직 주춤하고 있고 국제경제 불황에 따른 임대료수입 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낮은 금리와 임대료수입에 사실 상 모두 묶어 두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용 주식투자와 보다 나은 재산의 취득 및 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해서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서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그것을 초과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제로 계속해도 무방함.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고 사후감독과 위반 때의 추징 및 벌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편법의 우려는 없음.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 등의 자율성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법인에 대한 기본재산의 제한적 자율성 부여는 문제가 없을 것임.

3) 특히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 있는 미국에서는 기부금과 같은 기본재산을 주식과 채권, 고수익 펀드, 부동산 등에 자유롭게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예) 빌게이츠 재단과 하버드대학재산관리회사(HMC: Harvard Management Company)와 같은 미 공익법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식과 채권, 심지어 고수익 펀드 등의 투자(이상 실제투자 모두 65% 내외), 부동산 투자(실제투자 20% 내외) 등이 자율적으로 전면 허용되어서 연간 15% 에서 20%의 수익을 올려 교육, 장학, 의료, 세계 복지와 국내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벌이거나 세계 최고의 명문 학교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 있음. (* 별첨자료 참조)

2009년 3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관정교육재단 설립자 이종환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하는 자리에서 장학재단과 같은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활용의 자율성 부여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동 일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과 언론보도 참조)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III. 농지 기부 활성화 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5% 또는 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10%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농지를 출연 또는 기부 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법인계의 오랜 숙원임.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공익재단에 기부 또는 출연하고 싶어도 각 급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 하게 돼 있는 것을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사후규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경주 최부자의 후손 최 준 선생이 1947년에 막대한 농지를 출연해서 대구대학을 세우고 1950년에 설립 된 청구대학과 1967년에 합병하여 오늘 날의 영남대학이 됐는데 1949년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기 전이라서 그 많은 농지의 소유와 출연이 가능했고 오늘날과 같이 학교에 대한 농지출연이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최 준 같이 농지를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있을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학교가 아닌 다른 공익법인을 농지의 출연으로 설립하거나 이런 공익법인에 농지를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면 성실공익법인 특히 성실장학법인에 대한 제한적 농지소유 허용은 학교와 꼭 같지는 않더라도 제한적으로 필요함.

장학재단도 세계 식량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바이오 농업관련 박사학위 보유자를 상당히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학성과의 실험 실습 연구를 위한 연구소의 설립과 농지소유의 필요성이 절실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제안



박 두 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제안

박 두 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I . 들어가며 : 선결과제

□ 비영리단체 실태파악 현황 및 쟁점사항

○ 실태파악 현황

비영리단체 수, 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GDP)의 비율, 총 고용비율 등 이러한 통계가 조사되고 있으며 발표되고 있는지?

※ 참고 : 미국 비영리부문 통계

·비영리단체 수 : 국세청 등록 150만개 이상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총 고용의 7%

·비영리기관 직원수 960만명, 총급여액 480억달러

-출처 : BSC step-by-step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gencies(29p), Paul R. Niven, 2003

⇒ 측정할 수 없으면 성과도 없다. 우리사회는 측정은 고사하고 현황도 파악할 수 없다.

○ 쟁점사항

1. 자율규제 : 비영리조직 내부감사 및 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2. 책무성(모럴해저드 문제) : 정부지원금, 모금된 기부금의 사용내역과 활동 및 성과에 관해 제대로 측정하고 있으며 보고 또는 공개하고 있는가?
3. 규제기관 : 관리의무(보고자료 확인, 규제위반 관리감독)를 다하고 있는가?
4. 리더쉽 : 정치적인 중립(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단체로 정당 및 정치적인 목적의 설립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후배지도자를 키우지 않는 1인 리더활동, 시스템 부실 등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체계 방향에 관한 제안

○ 기부자(Donor) 및 모금단체(NPO) 측면 검토 필요

1. 기부자 측면 : 기부자 동기유발, 편의성 등 발표내용에 대부분 포함
2. 모금단체 측면 : 인가, 현황파악, 정보공개, 신뢰도 확보, 인프라 구축, 관리감독 등 비영리 부문 전체를 규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Hollistic Approach) 필요

최근 비영리기관이 직면한 도전 즉 이해관계자들의 재단정보(회계, 사업성과공개요구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비영리부문의 성과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커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보와 성과보고에 대한 요구들이 비영리조직의 성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영리분야 종사자들은 위임받은 재무자원과 인적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지만, 기부단체 정보를 파악할 통로가 없다. 기부자와 모금단체를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

○ 비영리부문에 관한 규제의 의미 제고 필요

비영리부문 자율규제기능이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공익에 이바지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10여년간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사회적인 신뢰도는 높아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음.

○ 비영리부문 자율성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 필요

1. 비영리조직에 관한 정부 규제의 종합적인 정책과 로드맵 필요
2. 비영리조직의 자발성, 민간부문을 고려하여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비영리조직 규모의 방대화,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 필요(단, 이 규제는 정보의 취합, 공개, 효율적 관리, 사회적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한 좋은 규제를 의미함)
3. 정부는 규제로 인하여 생기는 인력과 비용에 관하여 걱정하지만 규제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규제가 필요한데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게 작용. 즉, 규제의 미비로 인해 비영리조직에 관한 정보접근, 투명성 등, 신뢰도 문제로 인하여 기부 참여율이 저조 한다고 본다면 좋은 규제의 필요성과 비영리부문(기부)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할 것

Ⅱ. 주요 입법 개선방안

1. 단체별 기부금 코드 부여

◆ 비영리단체 중 기부금을 받는 단체인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단체에 표준화된 기부금 코드**” 를 부여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단체관리와 기부자에게 단체정보 제공

□ (현행)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단체로 구분되어** 있고 단체 내 사업별 **기부금 공제비율이 달라** 기부자 혼란발생 및 정부의 단체현황 파악 어려움

* 개인기부의 경우 소득공제 비율이 법정(100%), 특례(50%), 지정기부금(09년 15% → 10년 20%)에 따라 다름

□ (개정)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시 기획재정부 혹은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부금단체 코드를 부여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는 단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수립이 가능

*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기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표준화된 기부금단체 유형별 분류 및 코드체계를 부여하는 방안도입 필요

* 미국, 영국에서는 단체에 면세번호(exemption number)을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단체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

(예 : 미국에서는 ‘내국세법 연방법전 제26부(Internal Revenue Code Title 26, United States Code)’ 에 따라 단체의 면세지위가 ‘501a~7428’ 총 107개로 나뉨)

⇒ 2010년부터 도입되는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운영시 사전 선결과제**

* 2010년부터 교회, 성당, 절,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현재 병원비, 카드사용 내역처럼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조회가능 (근로소득자는 2010년말부터, 종합소득자는 2011년 5월부터 혜택가능)

2. 공시기준 및 보고서식 개선

◆ 비영리단체를 위한 “**통일된 보고서식을 마련**” 하여 단체가 정부에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고된 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높임

○ 현재 자산 10억미만의 중소 비영리단체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보고서식의 간편화를 통해 모든 단체가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현행) 현재 비영리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양하고 서식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업무가 과다 발생되고 관련부처는 다양한 보고서류를 받지만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비영리단체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주요 중복제출 사례 : 일반 공익법인 및 자산 1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상증법시행령 제41조, 상증법 제50조의3 에 따라 출연재산 및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신고 및 보고함 (단, 종교법인은 제외)

제출대상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류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
일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8종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자산 10억이상)	일반 공익법인 8종 및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등 총 15종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등 6종

☞ 위 서식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고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의 약 20%만 차지하는 등 제도개선 시급

□ (개정) 비영리단체의 의무제출 서식 중 중복 신고사항을 없애고 자산과 수입을 고려한 단체 규모에 따른 보고서식 내용을 개선하여, 비영리단체는 한번만 신고하며 관련부처는 신고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 미국, 영국에서는 비영리단체 의무제출 서식을 수입기준에 따라 하나로 통일하여 보고받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일정한 사이트에 공개

미 국*		영 국	
신고 기준	보고 서류	신고 기준	보고 서류
연수입 \$25,000 이하 (연수입 약3천만원 이하)	Form 990-N	연수입 £10,000 이하 (연수입 약2천만원 이하)	Annual return (Part A)
연수입 \$25,000~\$1,000,000 이고 자산 \$2,500,000 이하 (연수입 약3천만원~12억원 이고 총자산 약30억원 이하)	Form 990-EZ	연수입 £10,000 ~ £25,000 (연수입 약2천만원~5천만원)	
		연수입 £25,000 ~ £500,000 (연수입 약5천만원~10억원)	
연수입 \$1,000,000초과하거나, 자산 \$2,500,000 초과 (연수입 약12억원 초과하거나, 자산 약30억원 초과)	Form 990	연수입 £500,000 ~ £1,000,000 (연수입 약10억원 ~ 20억원)	Annual return (Part A&B)
		연수입 £1,000,000 초과 (연수입 약20억원 초과)	

▶ 보고서식 개선(안)

구분	보 고 기 준	보 고 서 류
현 행	자산 10억 이상~	결산서류 : 4개서식 12항목 1.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외부감사보고서(해당기관만 제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개 정	수입 5천만원 미만	약식 신고서 : 1p 2개 항목
	수입 5천만원 ~ 5억이고, 자산 10억 미만	기본 신고서 : 3p 6개 항목
	수입 5억이상~ 이고, 자산 10억 이상~	일반 신고서 : 6p 11개 항목

- * 한국가이드스타는 현재 보고서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회계연구센터(센터장:주 인기)와 공동연구 중에 있으며, 2009년 하반기 공익법인·기부자정부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후 2010년 상반기에 서식개정 작업을 위하여 정부에 제안할 예정.
- * 단, 종교법인은 면세코드 부여한 후 수입 및 자산에 관계없이 현황만 파악할 수 있는 ‘약식신고서’ 로 적용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적용가능

⇒ 비영리단체가 수입기준에 따른 통일된 서식으로 보고하게 될 경우 비영리단체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관련부처의 일관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 중소 비영리단체의 경우 보고양식 간편화를 통한 업무부담 감소
- * 또한 자산 10억 미만의 중소 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함으로서 기부확산에 긍정적 영향

3. 비영리조직 관리감독 일원화

- ◆ 비영리단체의 인·허가, 보고체계를 일원화하고 단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국가차원에서 구성한 후 운영
- 법률에 따라 각 주무부처, 지자체별로 관리감독 하는 비영리단체의 관리감독 일원화 필요

□ (개정) 국회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산발된 법·제도 조항을 간소화하고 단체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단계적인 노력 필요

- * 1안 : ‘국회’ 에서 비영리조직 통합관리기구 신설
- 2안 : ‘국세청’ 으로 관리감독 일원화

* 해외 비영리조직 통합관리 사례

1. 미국 : 비영리단체 관리감독업무를 국세청(IRS)에서 전담
 - 미국 내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매년 국세청에 소득면세신고서(Form 990)를 제출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세혜택을 박탈
 - 국세청에 제출된 비영리단체의 정보는 지방정부와 정부부처에 제공되고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는 불필요한 중복보고를 줄일 수 있어 납세순응비용이 절감
2. 영국 : 별도 독립기구인 자선사업 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를 설치하여 비영리단체 등록, 관리감독 등 업무를 일괄수행
 - Charities Act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 사업내용 및 성과, 회계정보 등의 연차보고서를 제출 : 단체 재정규모에 따라 보고양식과 외부감사기준이 다르고, 보고양식은 규모별로 통일
 - 일원화 관리를 통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모든 비영리단체 정보취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검증, 평가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단체경영 및 회계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가능
3. 일본 : 내각부 산하 공익법인인정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을 실시하며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 따라 내각부에서는 공익법인종합정보시스템(Public Interest Corporation Total Information System: PICTIS)을 개발하여 운영
 - 이 시스템의 서비스는 공익법인정보 등록,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공익법인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 인정업무의 효율화, 공익법인 정보취득의 용이성, 정부 간 정보제휴 및 신속한 정보 제공, 일원화된 시스템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진
4. 호주 : 호주 경제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에 <비영리단체 공시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시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영리단체의 기부금보조금 운용능력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함.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15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관리감독 일원화가 포함됨
 - 호주 경제상임위원회 <비영리단체 공시제도> 보고서 권고안
 - ① 비영리단체를 지칭하는 공통용어와 규모별로 비영리단체를 구분하는 용어 (예: 영세규모-소규모-중간규모-대규모)의 통일 ※모든 정부부처 동일사용
 - ② 내각부 산하 비영리단체 관련 쟁점들(issues) 다루는 조직구성
 - ③ 비영리단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 설치
 - ④ 영국 자선사업감독위원회를 모델링하여 비영리단체의 의무등록, 관리·감독, 교육·훈련 업무 수행

- ⑤ 호주 연방정부는 독립기구 설치에 필요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
- ⑥ 모금법(National Fundraising Act)제정(국가적인 차원으로, 모든 단체에 적용), 단체 규모·모금규모에 상응하는 보고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제출
- ⑦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제 간소화하여 혼란, 순응비용 절감
- ⑧ 비영리단체 관련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으로 정비
- ⑨ 비영리단체의 정부보고체계 단계적으로 구축
- ⑩ 단계적인 보고 체계는 비영리단체의 연간 수입에 따라 구분(단체규모가 클수록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 증가)
- ⑪ 비영리단체와 모든 정부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양식 도입
- ⑫ 공시서류의 항목은 서술과 숫자로 기입(회계양식의 경우)되며, 특히 회계양식은 단체들 간의 비교가 쉽고, 내역이 투명하게 나타나게 구성
- ⑬ 가이드스타시스템의 도입비용과 유익을 검토
- ⑭ 등록된 비영리단체 정보를 제공받는 통계청은 비영리분야의 구조,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연구물을 정부에 제공
- ⑮ 이 보고서의 제안을 실현할 전담팀 조직(전담팀은 호주정부협의회(COAG)에 분기별로 진행 보고)

4. 비영리단체 회계기준 제정

- ◆ 단체의 회계기준과 재무제표 형식상의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을 제정”** 하여, 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 수행
- 기업에는 ‘기업회계기준’ 이 있지만, 비영리단체는 **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 부재로** 단체의 투명성 확보 미비

□ (현행) 비영리단체는 설립 근거법에 따른 규정에 맞추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별 회계처리 내용 다양**. 따라서 **단체별 예산현황을 비교할 수가 없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예산 처리를 할 경우 혼란유발**

* 주요사례

1.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속하는 경우 회계기준 언급이 없음.
2.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히 어떠한 원칙인지 불분명(「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인 경우 해당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이 아닌 시설일 경우 적용받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개정)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단체의 통일된 회계처리로 투명한 단체운영과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비영리단체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은 단체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를 표준화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며, 단체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기부자의 기부참여율 및 기부금 비율이 보다 증가될 것

- * 2003년 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의무 사용되지 않음
- * 일본 : 2004년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회계장부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기장하고 대차대조표, 기본재산증감명세서,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의 작성을 의무화함.

5. 공익법인 정보공개자료 활용

◇ 공익법인의 공개된 자료를 “필요한 경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공익법인을 위한 연구목적의 경우 자료제공을 허용”

- 법률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자료의 열람만 가능

□ (현행)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자료 열람만 허용. 관할청에서는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정보보호’ 항에 의거하여 자료의 저장, 인쇄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항에 따르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과세정보” 라 함.
- 하지만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개자료는 ‘납세의무’ 보다는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개정이유 참조)

□ (개정) 국세청에 신고 및 보고하는 서류 중 정보 공개된 자료는 제도 도입취지와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시스템 개편

- *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과세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련조항 마련
- 관련조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 * 제도도입 취지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은 결산서류를 보고받고, 공시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마련 필요

* 정부자료 제공 및 정보공시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 : 미국 가이드스타와 IRS(국세청)

- 비영리면세단체의 연간보고를 받고 있는 IRS에서 매달 이 보고 자료를 가이드스타에게 제공. 또한 가이드스타 뿐 아니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연 400달러의 비용만으로도 IRS로부터 스캔된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IRS와 미국 가이드스타는 데이터자료 관련 매매계약 체결 후, 가이드스타에서는 한 단체의 보고자료 당 약 300항목의 데이터를 코딩하고 IRS에서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코딩된 데이터를 가이드스타로부터 구입함

2. 영국 : 영국 가이드스타와 Charity Commission(자선사업감독위원회)

- 정부와 가이드스타는 사용권한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 후, 가이드스타는 정부 소유의 자료인 '비영리단체의 정부보고자료' 를 사용할 권리를 인가받아 이를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이 정부보고 자료는 스캔된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가이드스타에게 제공됨

3. 일본 : 일본비영리단체협회와 내각부

- 내각부가 운영하는 PICTIS(공익법인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된 공익법인 정보를 일본 비영리단체협회가 확보하여 이 협회가 운영하는 NOPODAS(비영리단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정보를 공시함
- PICTIS에서 확보하는 공익법인 정보는 기본정보(단체명,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정보 등)이며, 이 외의 상세한 사업 및 회계정보는 공익법인의 자발적 추가등록을 독려할 예정

4. 호주 : 호주 경제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Economics)

- '비영리단체 공시제도' 보고서를 내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실현을 꾀하고 있음
- 보고서의 15가지 제안사항에는 가이드스타 시스템 도입의 효과와 비용 검토가 포함되어 있음 <Disclosure regimes for charities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2008. 12

⇒ 해외 사례처럼 국세청과 한국가이드스타 간에 협약 체결 후 국세청은 법인으로부터 서류를 보고받고, 보고 서류의 공시 업무는 한국가이드스타에서 담당하여 국세청과 한국가이드스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Ⅲ. 마치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국회가 좋은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호주의회처럼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기를 제안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및 정책방향



주 영 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및 정책방향

주 영 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1 기부행위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우리나라 기부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세제지원 확대, 사회문화 성숙 등에 힘입어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07년 기부금 지출 실적을 보면 '99년대비 기부 인원은 2배, 기부 금액은 2.6배 증가
 - 특히, 개인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에 따라 기부금액이 '99년대비 5.3배 증가

[연도별 기부금 추이]

(단위 : 만명, 조원)

구 분		1999	2001	2003	2005	2007
개인 (근로소득자)	인 원	174	263	296	310	348
	금 액	0.8	2.7	3.2	3.6	4.2
법인	법인수	2.2	2.9	3.9	3.2	4.5
	금 액	2.1	1.7	2.2	2.8	3.4
기부금 총계		2.9	4.4	5.4	6.4	7.6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 (기부한 자)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법인세를 경감
 - 기부자(개인, 법인)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등에 따라 기부자의 연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차등적용**

구 분	개인	법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20%(2009년 15%) 한도	소득금액의 5% 한도
법정·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100% 한도	소득금액의 50% 한도

- **상속재산**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시 과세대상 재산에서 공제**
- (기부받은 자) **증여세 비과세** 및 기부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 단, 공익법인에 의한 계열사 지배 방지 등을 위한 동일법인주식 보유한도 등 일정 제한
 -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 법인세를 50 ~ 100% 감면**
 - * 이자배당소득은 100%, 기타 사업소득 등은 50%

[기부금단체의 공익성·투명성 확보]

-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2007말~2008초 관련법령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 기부금모집·활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정치활동 금지,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시 5년간 재지정 금지 등
 -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
 -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지정 취소 및 명단 공개**
 - 공익법인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등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외부감사 등 의무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보관과 관련한 **의무 강화**
 -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보관 확대 : (08) 연간 100만원이상 (09) 50만원이상 (10) 전체
 - * 연간 발급명세(발급건수금액 등)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할 의무 신설
 - * 가산세 강화 (허위기재 금액의 1%→2%, 미작성·미보관 금액의 0.1%→0.2%)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 (2009 세제개편안)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내년(2010년)부터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 → 20%로 확대될 예정
(2007년말 소득세법 旣 개정)
 - * 현재 개인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3~6% 정도이고, 근로자의 99.8%가 소득금액의 20% 이하를 기부하고 있음
 - 이는 사회복지·자선·교육·문화분야 등에 대한 개인위주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임
 - * 다만, 종교단체 헌금에 대해서는 개인 기부가 종교단체에 집중(80% 추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0%를 유지

[고액 기부자를 위한 이월공제 확대]

- 현재 개인 기부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특례기부금(50% 공제한도)은 1년, 지정 기부금(15% 공제한도)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 *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후 연도에 공제받는 제도
- 내년부터는 이월공제를 대폭 강화하여 일시에 고액을 기부한 사람도 충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이월공제 대상을 법인·개인사업자로 한정하던 것을 근로소득자까지 확대
 - 개인·법인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3년 → 5년)
 - * 단,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50%)는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
 - ⇒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결과가 되어 고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확대 지원]

-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기부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현행) **법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만**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
 - (개정)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을** 지정 기부금단체에 추가
-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해 **지정기부금 단체**(공제한도 법인 5%, 개인 15%)로 지정
 - (개정) 「**미소금융재단**」(舊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해 **특례기부금 단체**(공제한도 법인·개인 50%)로 인정
- ⇒ 휴면예금 출연 원활화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Micro-Credit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정책방향

- 기부 행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 때 기부 및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중요
 -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는 이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
- 외국사례, 그간의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의 기부 보다는 소액 다수의 개인 기부 위주로 기부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그간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지속 확대하여 내년부터 20%로 확대* 될 예정인 바
 - * (~1999) 5% → (2000~2007) 10% → (2008~2009) 15% → (2010) 20%
 -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개인기부 확대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
 - 아울러, 종교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개인 기부가 사회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분산 될 필요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기부금의 모집 및 활용내역의 투명한 공개,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지속 추진
 - 동일법인주식 보유한도(일반공익법인 5%, 성실공익법인 10%) 문제는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검토·추진될 필요
 - *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
-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신설은 외국사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
 - 용역 기부의 경우 현재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소득공제 (1일 5만원) 허용
 - 이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세제지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용역가치 산정·용역제공여부 확인 등 제도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정기기부자 세액공제 문제는 대부분의 외국도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기부자간 불형평성·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

- 끝으로,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 구분을 단순화·체계화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 필요
 - 중장기적으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상당수 국가가 국가·지자체 등과 일반 공익단체로 이원화
 - 다만, 기부금단체별 특수성과 제도정비에 따라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단체의 어려움, 기부 활성화 방향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



고 윤 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

고 윤 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

1. 제도 개선 입법안에 대해 공감

-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화하고 증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공공영역의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이를 보완하는 민간영역의 참여와 역할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음.
-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방법 중 하나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입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감함**
-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및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2. 지방세 감면 확대 및 용역기부 개선은 신중한 검토 필요

□ 임대용 부동산 기부 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검토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를 80%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100% 면제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음
-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확대는 다른 비영리단체과의 형평성, 기부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

-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특혜로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임대 등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학법인을 제외한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학교·학술연구단체·문화예술단체 등 다른 비영리단체는 모두 과세하고 있음
- 장학법인에 대한 현행 80% 감면도 특혜인데, 추가 확대한다면 다른 비영리단체의 임대용 부동산과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동등한 감면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것이며 부동산을 기부받는 장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부 활성화와 관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 * 취득등록세 100% 면제 확대시 약 4억원 추가 세수결손 예상
- 지방세 감면혜택을 활용하여 장학법인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는 문제 발생 등 부작용도 우려됨
 - ※ 2008년도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현황

구 분	건 수	감 면 액
취득세	53건	795백만원
등록세	42건	750백만원

□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시대변화에 따라 기부는 금전과 현물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기부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의 범위를 넓히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이런 맥락에서 용역기부에 대해 1년 소득금액을 일할(日割)계산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용역을 기부하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실제 2000년대 중반부터 프로보노(pro bono)로 불리우는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 기술 또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다양한 용역기부 즉 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됨
 - 용역기부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기부와 자원봉사는 공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행위임.
- 또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부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났음

- 용역기부를 포함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 활성화는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도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용역기부 즉 자원봉사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제기됨
 - 첫째, 제도 개선입법안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가치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미국의 경우에도 이 문제로 인해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둘째, 어느 용역기부(자원봉사)까지 기부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하는 범위 설정도 필요함. 전문가들의 용역기부만 인정할 경우 다른 많은 자원봉사와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셋째, 동일한 용역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기부금을 인정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우선 용역기부 활성화차원에서 용역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